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 한반도 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 최진욱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 한반도 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 최진욱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 한반도 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인 쇄 2007년 12월

발 행 2007년 12월

발 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606

(팩스밀리) 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도서출판 늘품 (2275-5326)

인쇄처 도서출판 늘품

가 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0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
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 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 최진욱. --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p. ; cm. -- (KINU 정책연구시리즈 ; 07-07)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8479-449-8 93340 : 비매품

349.9-KDC4
327.17-DDC21

CIP2007004154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 한반도 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목차

I . 서론	1
II .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정	5
1. 정의의 전쟁, 불의의 전쟁	6
2. 용서를 통한 평화: 웨스트팔리아조약 이후	9
3. 응징을 통한 평화: 나폴레옹전쟁 이후	12
4. 2차 세계대전의 유산과 현실정치	17
III . 평화조약의 사례	23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평화조약 없는 러·일관계 정상화	24
2. 베트남 평화협정: 미국이 승리하지 못한 전쟁의 평화조약	27
3. 보스니아 내전과 데이튼 평화협정: 내전과 현실정치	31
4. 종전선언 이후 끝나지 않는 이라크전쟁: 정권교체	35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 한반도 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IV. 한반도 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39
1. 평화조약 체결시 일반적 논쟁	40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의 특수성	46
V. 결론	57
참고문헌	61
최근 발간자료 안내	65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서 론

전쟁은 국가간 전쟁(interstate war), 식민지 전쟁과 같은 체제외적 전쟁(extra-systemic war), 내전(civil war)의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협상, 무조건 항복, 퇴각, 흡수, 일방의 멸망에 의해 끝났다.¹ 교전당사국들은 전쟁이 끝나면 평화를 회복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특히 국가간 전쟁의 경우 대부분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평화 조약은 평화정책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지위를 상실했으며, 2차 세계대전 후 많은 전쟁은 평화조약 없이 끝나기도 하였다. 예컨대, 1991년 걸프전은 이라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조건 수용함으로써 종료되었다. 한국 전쟁과 같이 평화조약 없이 휴전조약에 의해 전쟁이 종료되기도 하였다. 어떤 전쟁들은 법적 해결 없이 흐지부지 끝나면서 평화가 회복되기도 하였다.

평화체제 효용성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평화조약은 근대 국제관계의 역사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² 예컨대, 1643년 웨스트팔리아조약은 근대국가의 시작이며 근대법의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으로, 1919년 베르사이유조약은 국제기구의 시대를 개막하는 전환점으로 간주된다. 무엇보다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를 회복하는데 있어서 평화 조약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평화조약은 몇 가지 주요한 주제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직접교전국이 아닌 이해 당사자들은 평화조약에 참여하는 문제를 포함해 평화조약의 당사자는 누구이어야 하는가? 승전국은 패전국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평화회복에 도움이 되는가? 평화조약의 체결 후 이의 준수는

¹ 1800년부터 1980년까지 종료된 142건의 전쟁의 종료 유형에 대한 한 연구에 의하면, 협상에 의한 종전이 57건, 무조건 항복 37건, 멸망 26건, 제3자(국제기구) 중재 9건, 퇴각 7건, 흡수 6건 등이다. Paul R. Pillar, *Negotiating Peace: War Termination as a Bargaining Proces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pp. 16–23.

² Arnold Toynbee, “Anarchy by Treaty, 1648–1967: A Commentary on the Documentary Record,” Fred L. Israel ed., *Major Peace Treaties of Modern History: 1648–2000*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2002), p. xxxvii.



어떻게 보장하는가? 궁극적으로 평화조약은 필요한가?

1953년 한국정전협정에 의해 군사적 적대행위가 정지된 이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한반도의 핵심적 문제였다. 냉전시기 남북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수많은 제의와 역제의가 있었으나, 상호 불신과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 주변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으나,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연계되면서부터 였다. 2005년 9월 19일 북핵관련 6자회담에서 남북한과 미·일·중·러는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해 협상”을 한다고 합의한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 통제, 평화협정 체결의 3대과제가 연계를 갖고 추진될 때 비로소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³ 그러나 기존 연구는 비핵화 프로세스, 군비통제, 평화체제의 법적 관점, 협정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세부 방안, 평화체제의 국제적 보장과 같은 기술적 측면에 집중하였으나, 평화체제의 역사적 배경과 사례에 대한 연구는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화과정과 사례에 대한 분석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구 역사에서 평화조약의

³ 장의관,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통일정책연구』 16권 2호 (통일연구원, 2007), p. 64.

변천과정을 분석한다. 평화조약의 사례로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베트남 평화협정, 보스니아 평화협정을 다루었다. 각 평화협정은 차별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라크 전쟁은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전쟁의 예로 포함시켰다. 평화조약에 대한 변천과정과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화조약(peace treaty)’과 ‘평화협정(peace agreement)’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데, 이들이 각기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조약의 명칭으로는 협정이외에도 협약, 협장, 의정서, 교환각서, 양해각서, 약정, 합의의사록, 잠정약정, 최종의정서, 일반의정서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각각의 조약체결 관행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할 뿐이다.⁴ 다만 한반도에서는 평화조약보다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평화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⁴ 외무부, 『알기쉬운 조약입문』 (서울: 외무부, 1996), p. 11.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정

종전 후 응징을 통해서 평화를 회복할 것인가 용서를 통해서 평화를 회복할 것인가는 역사적으로 평화조약에서의 본질적 문제였다. 중세시대 ‘정의의 전쟁’ 개념하에서는 정의로운 교전국과 정의롭지 못한 교전국이 구별되어, 전쟁이 끝난 후 정의롭지 못한 교전국을 처벌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는 주로 군주에 대하여 반역을 한 신하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였다. 주권국가의 등장과 함께, 정의의 전쟁 개념이 사라지고, 전쟁이후 평화조약에서는 모든 것을 망각 속에 묻는 것이 평화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전쟁 이후 평화조약은 다시 철저한 응징을 목표로 하였다. 20세기 들어 평화조약에서 응징은 더욱 일반적이 되었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정착으로 정치지도자들이 패전국에 대하여 응징을 원하는 국민의 여론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 정의의 전쟁, 불의의 전쟁

서로마제국의 붕괴 후 중세 암흑기 동안 기독교의 반전 감정은 매우 미미하였다. 샤를르마뉴 대제는 비기독교 계르만족과 끊임없이 전쟁을 했으며, 교황은 이를 장려하였다.⁵ 당시 승자는 패자가 다시는 힘을 복구하지 못하게 완전히 파괴함으로써(살육, 부녀자 납치, 방화) 복수를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완전치 못한 파괴는 적으로 하여금 늘 복수를 하도록 하였다. 중세 국제질서가 성립되어 가면서 정치인들은 점차 전후 승리를 보장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전후 처리를 생각하게 되었다.

중세에는 ‘정의의 전쟁’에 대한 개념이 있었는데, 이 개념에 따르면 모

⁵ Philip Towle, *Democracy and Peacemaking: Negotiations and Debates 1815–1973* (London: Routledge, 2000), p. 3.

든 전쟁에는 정의로운 교전국과 정의롭지 못한 교전국이 있었다. 정의롭지 못한 교전국은 사실 전쟁을 수행하는 권리가 부정되었으며, 평화조약에서 전쟁책임은 정의롭지 못한 교전국에게 돌아갔으며 징벌이 가해져야 된다고 믿었다. 왕과 신하가 전쟁을 할 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일종의 반역행위였으며 패전한 신하는 전쟁 도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쟁이 초래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했다.

15, 16세기 군주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대표하는 권한을 독점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군주들은 자신이 통치하는 정치체의 대표나 전권을 위임받고 협상하거나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즉, 자신들의 이름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으며 직위는 이를 다음에 명기되었다. 즉, 군주들간의 조약은 정치체(potitical entities)간의 조약이 아니라 사적 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⁶ 또한 많은 평화조약들은 군주와 신하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었다.

중세기 조약의 체결절차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군주가 자신을 대표하여 협상에 나서는 대사에게 전권을 위임한다. 전권위임대사가 조약에 합의하고, 군주는 이를 인준한다. 군주는 서명한 조약문을 교환함으로써 이에 대한 동의를 표한다. 이러한 방식은 1500년까지 표준방법이었으나, 점차 줄어들다가 18세기까지 사라졌다.

평화조약이 체결된 후 이의 준수를 보장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다. 우선 선서에 의한 확인(confirmation by oath)으로 이는 교회에서 종교의식으로 치루어졌는데, 종종 조약 상대국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또한 서명과 인장이 찍힌 문서를 통해 조약을 받아들임을 확인하기도 하였

⁶- Randall Leaffer, "Peace treaties from Lodi to Westphalia," Randall Leaffer, ed., *Peace Treaties and International Law in European History: From the Late Middle Ages to World War On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 17.

다. 16세기 초부터 서명 확인과 선서가 구별되었는데 주로 전자가 공식적인 확인절차였다면, 후자는 추가적으로 개인적 준수의무를 표시하는 방법이었다.⁷ 조약의 준수를 보장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인질을 교환하는 방법도 있었다.

15세기 평화조약에 제3자가 포함되는 것은 일반적이었다. 제3자는 조약당사국의 동맹국인 경우가 많았는데, 조약당사국은 동맹국을 평화조약에 참가시킴으로써 평화조약이 동맹국에 해가 되지 않음을 확인시켰다. 또한 제3국은 평화조약에 참가함으로써 양자간 체결된 국제관계의 법적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였다. 종종 전 유럽국가들이 평화조약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중세기의 평화조약이 군주간의 사적 계약이었기 때문에 조약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귀족(nobles), 성직자(prelates), 평민들(towns)이 군주가 서명한 조약을 인준(co-ratification)하도록 하였다. 평화조약을 털 개인적이고 보다 제도화하기 위해서 삼부회(three estates)를 소집하여 인준하도록 하거나 왕실에 등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 의회의 인준을 통해 조약이 국내법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국가의 행위가 되는 것과는 달랐다.

또한 조약 서명자의 사망과 함께 조약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후계자에 대해서 조약의 효력이 승계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후계자가 조약에 구속되는 것은 자명한 것이 아니고, 군주 자신들이 서명한 조약에 후계자를 구속할 수 있었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중세의 몇몇 조약들은 후계자가 승계하면서 즉시 조약을 인준하도록 요구하였다. 일부 조약들은 조약 당사자가 사망 후 일정기간 조약이 유효하지만, 후계자

⁷- Leaffer, "Peace Treaties from Lodi to Westphalia," p. 25.

가 이를 인준할지 선택할 권한이 있었다.

16세기 중반 이후 주권 개념이 등장하고 군주의 독점권이 증대되고 조약법이 객관화됨에 따라 개인에 의한 것이든 삼부회에 의한 것이든 인준절차는 거의 사라지고,⁸ 군주가 자신의 후계자를 구속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란도 사라지게 되었다.⁹

2. 용서를 통한 평화: 웨스트팔리아조약 이후

르네상스 시기 이후 전쟁은 기독교 사회에서 죄악과 탐욕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으며, 전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근대 들어서 중세와 가장 큰 차이점은 전쟁 후 체결되는 평화조약이 과거 죄에 대한 고백의 장이 되었으며, 사면과 용서에 대한 조항이 일반적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는 15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고 16세기부터 보다 빈번해졌으며 17세기 들어서 거의 모든 조약에서 발견되었다. 평화조약의 목표는 원래 하나인 기독교사회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라 믿었다.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국제관계의 틀이 형성된 것은 1643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성사시킨 평화회의였다. 웨스트팔리아조약은 주권, 국가간 형평성, 종교적 중립성, 세력균형과 같은 국가들의 근대법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16세기 중반까지 중세유럽질서가 붕괴되었지만, 새로운 질서가 자리잡지 못하다가 웨스트팔리아조약을 계기로 근대유럽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웨스트팔리아조약을 전환점으로 평화조약에서는 중세시대와 다른 많

⁸ 왕실에 등록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⁹ Leasffer, "Peace Treaties from Lodi to Westphalia," p. 21.

은 변화가 발견된다.¹⁰ 군주는 여전히 자신이 지배하는 영토의 위임하에서 평화조약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지만 군주의 생명과 함께 조약의 효력기간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17, 18세기의 조약은 군주의 생명과 관계없이 무제한적인 것으로 후계자를 구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조약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선서나 인질 교환 같은 방법은 웨스트팔리아조약 이후 사라졌다. 제3자가 포함되는 전통은 여전히 계속되었으나, 일부조약에서 제3자의 일부 혹은 대부분이 포함되지 않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제3자가 평화조약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여서인지 초청받지 못하였기 때문인지 분명치 않다.

무엇보다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 이후 평화조약은 누구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망각 속에 모든 것을 묻어두고 영원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웨스트팔리아조약에서 전쟁의 참화에 대한 장황한 참회(plundering, depredation, harm-doing, injuries, miseries, ruins, disroders)가 있었으며, 항구적인(perpetual, eternal, permanent) 평화에 대한 언약이 뒤따랐다.¹¹ 평화조약은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전쟁기간 자행된 모든 행동에 대하여 사면을 선언하였다.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군대에 의해 자행된 공포의 기억을 망각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러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사면이 없다면, 적대감이 계속되고 전쟁이 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다.

‘기독교사회의 보편적인 평화(Christian and Universal Peace)’, ‘항구적이고 진정한 우정(perpetual, true, and sincere Amity),’ ‘영원한

¹⁰ Heinz Duchhardt, “Peace treaties from Westphalia to the Revolutionary Era,” Randall Leasffer, ed., *Peace Treaties and International Law in European History*, pp. 47–50.

¹¹ Towle, *Democracy and Peacemaking*, pp. 4–5.

망각, 사면(perpetual Oblivion, Amnesty, or Pardon)'과 같은 키워드는 새로운 수식어로 이후의 평화조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1659년의 프랑스-스페인간 피레네(Pyrenees) 조약, 1668년 프랑스-스페인간 엑스 라 샤펠(Aix la Chapelle) 조약, 1713년 영국-스페인간 우트레히트(Utrecht) 조약 등은 평화와 우정에 대한 미사여구로 가득차 있다.

전쟁이 용서와 화해로 종결될 수 있었던 것은 주권군주의 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5, 16세기 평화조약은 종종 군주와 신하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패전한 신하는 반역죄로 처벌받아 마땅하였다. 한편 중세의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차별적 개념은 근대주권국가의 등장과 함께 사라졌다. 주권국가간의 전쟁에서 정의로운 교전국과 정의롭지 못한 교전국 차별이 불가능하였다. 전쟁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군주간의 전쟁이었으며, 주권국가내에서 군주와 신하간에는 더 이상 중세시대와 같은 평화조약이 불가능하였다. 주권국가의 등장과 함께, 국제적인 법적영역과 국내적인 법적 영역사이에 구별이 뚜렷해졌다. 대외적으로 군주가 주권국가와 보다 분명히 일치됨으로써 평화조약에 대한 공동인준이나 조약의 준수를 위한 구속력을 위한 조치가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의 평화조약은 웨스트팔리아조약 모델과 우트레히트조약 모델로 나눌 수 있다.¹² 웨스트팔리아조약 모델에서 모든 전쟁당사자는 한 장소에 모인다. 중재자가 개입되며 전쟁당사자가 아닌 국가도 참여하여 평화조약 전체의 준수를 보장한다. 우트레히트조약 모델은 본 회의전 비밀접촉을 통해 실질적 결과에 합의한다. 중재자는 더 이상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전쟁당사자 이외에는 협상의 빠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

¹²—Duchhardt, "Peace treaties from Westphalia to the Revolutionary Era," pp. 52–53.

해서만 조건부로 공개된다. 평화조약의 준수와 관련 웨스트팔리아조약과 같이 조약 전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이 되는 부분에 국한해서 보장한다.

이 시기 평화조약 체결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 되었는데,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었다. 웨스트팔리아조약은 무려 4년이 소요되기도 하였다.

3. 응징을 통한 평화: 나폴레옹전쟁 이후

웨스트팔리아조약 이후 주권의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약은 군주간의 조약으로 인식되었다. 즉, 웨스트팔리아 조약(Peace Treaty between the Holly Roman Emperor and the King of France and their respective allies. Munster, October 24, 1648) 당사자는 여전히 군주들이었으며, 1866년 독일과 오스트리아간의 전쟁 후 체결된 평화조약(Peace Treaty between His Majesty, the King of Italy and His Majesty, the Emperor of Austria, Vienna, October 3, 1866)까지도 프러시아의 왕과 군주들에 의해 조인되었다.

평화조약에 최초로 군주의 이름이 아닌 국가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1871년 5월 10일 프랑크푸르트 조약(Definitive Treaty of Peace between France and Germany)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국가명이 명시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1895년의 시모노세키조약(Peace Treaty between the Emperor of Japan and the Emperor of China)에서 군주가 조약 당사자로 표기되었다. 이 시기에는 물론 군주가 조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조약의 당사자는 군주 개인이 아니라 국가였다.

평화조약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교전국간 양자조약으로 체결되지만,

둘 이상의 동맹국이 전쟁에 개입되었을 때, 몇 개의 양자조약이 이루어 질 수도 있고, 하나 혹은 몇 개의 다자조약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 1814년 파리 평화조약에서는 프랑스-프러시아, 프랑스-영국, 프랑스-오스트리아, 프랑스-러시아의 양자조약이 체결되었고, 크리미아전쟁 후 체결된 1856년 파리 평화조약에서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조약이 발칸반도의 정착을 다루는 등 유럽질서에 중요하였기 때문에 조약당사국이 되었다.¹³ 평화조약에 참여하는 제3자는 평화조약 이후의 환경의 변화를 인정하고, 평화조약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과 함께, 국가간의 정치성이 확립되면서 상대국에 대한 적대감이 고취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문화와 종교가 다른 타국가와의 전쟁시 더욱 두드러졌다. 민주주의 체제의 정착과 함께 전후 치리는 과거 절대군주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견해가 중요하게 반영되었다.

19세기 들어서 이전 시기와 가장 큰 차이점은 용서가 아닌 응징에 의해서 평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하였다. 17, 18세기 일반적이었던 사면조항이 19세기 들어 유럽의 평화조약에서 사라졌다.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전쟁 이후 체결된 1815년 파리 평화조약에서 일반사면이 사라지고 패전국인 프랑스에게 7억 프랑이 배상금으로 부과되었다. 프랑스의 네이(Ney) 원수가 처형되었고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되었다. 이는 훗날 뉘른베르크와 동경의 재판으로 이어졌다.

1871년 보불전쟁의 처리를 위한 프랑크푸르트 평화조약에서 무려

¹³ Heinrich Steiger, "Peace treaties from Paris to Versailles," Randall Leasffer, ed., *Peace Treaties and International Law in European History: From the Late Middle Ages to World War On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 74.

50억 프랑의 배상금이 패전국인 프랑스에게 부과되었으며, 이는 점령군의 철수와 연계되어 보장되었다.¹⁴ 영토할양은 승전국의 권리로 간주되었으며, 프랑스는 알사스·로렌지방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보다 명백한 근거에 의한 배상은 1919년의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에서 처음으로 요구되었다.¹⁵ 베르사이유조약 231조는 독일이 모든 손실과 피해의 근원이며 이에 대해 책임져야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전쟁배상금 부과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1871년 승전국인 독일은 독일영토가 아닌 중립지대인 브러셀에서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었고, 이후 프랑크푸르트 회담에서도 60억프랑을 요구하였으나 패전국인 프랑스 요구대로 50억프랑에 합의하였다.¹⁶ 그러나 1919년 1차 세계대전 후 평화조약 초안 작성시 패전국 독일에게는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연합국이 마련한 초안에 대해 2주 일내 영어나 불어로 서면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독일의 온건한 평화주의자들조차도 연합국의 평화조약 초안을 감정적으로 거부하게 되었다.

1차 세계대전후 연합국은 독일의 군국주의를 말살시키는 의도를 공유

¹⁴ 1970년 7월 19일 시작된 보불전쟁은 1871년 1월 28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고 2월 28일 예비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브러셀에서 평화조약을 위한 협정이 시작되었으나 지지부진하자 비スマ르크는 5월 6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회의를 소집하였고 4일만에 조약이 체결되었다.

¹⁵ 응징에 의한 평화가 1815년이 아니라 1919년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리스퍼는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은 중세 이후 주권국가간 최초의 응징의 평화(punitive peace)로서, 주권국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Randall Leasffer, "Introduction," Randall Leasffer, ed., *Peace Treaties and International Law in European History: From the Late Middle Ages to World War On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 4.

¹⁶ Christian Tomushcat, "The 1871 Peace Treaty between France and Germany and 1919 Peace Treaty of Versailles," Randall Leasffer, ed., *Peace Treaties and International Law in European History: From the Late Middle Ages to World War On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 387-388.



하였으나, 프랑스와 영국, 미국의 방법은 차이가 있었다. 프랑스는 독일군이 징병제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영국과 미국은 독일군의 지원병제를 선호하였다.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프랑스의 포슈(Foch) 원수가 이끄는 최고전쟁위원회(The Supreme War Council)의 사령관들은 향후 독일군은 2십만 명의 병력과 9천 명의 장교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면서, 병사들은 일년 이하의 기간으로 징집하고 장교와 하사관은 지원제로 하되, 장교는 25년, 하사관은 1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였다. 포슈 원수는 독일군을 약화시키는 핵심은 직업군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한편, 영국의 조지(Lloyd George) 수상과 미국의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에게 독일 무장해제의 첫 번째 수순은 징병제의 폐지였다. 이들은 포슈 원수의 주장대로 매년 2십만 명이 훈련받으면 10년이면 2백만 명이 훈련 받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을 우려했다. 조지 수상은 모든 병력을 지원병으로 하고, 12년을 복무하도록 하였다. 영국은 너무 많은 직업군인의 규모에 대한 포슈 원수의 걱정을 반영하여 독일군의 규모를 10만 명으로 감축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는 국내의 반란을 진압하고 동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수라고 생각하였다. 더욱 이 독일군은 탱크와 잠수함과 같은 중무장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공군도 금지되었다.

1871년 프랑크푸르트 평화조약에서 향후 프랑스의 군대 규모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에 비해, 1919년의 베르사이유조약은 보다 철저한 응징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베르사이유 조약을 불완전하게 만들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가혹한 응징에 대한 도전이 히틀러의 인기의 요체였다고 할 수 있다.¹⁷ 조지 수상과 윌슨 대통령의 징병제 폐지 자체가 결코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독일의 징병제 폐지를 기초로 전세계적으

로 무장해제를 하려 했던 것은 비현실적이었으며 결국 나치에게 재무장의 구실을 주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개인사면도 평화조약에서 사라지고 개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¹⁸ 1814년 파리조약 16조는 개인 부역자(특히, 수복된 영토내의 부역자)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나, 1919년 베르사이유 조약 227조는 독일황제 빌헬름 2세에게 ‘국제적 도덕성과 조약의 순결성을 위반한 책임’으로 국제법정에 출두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제적 도덕성’이라는 죄목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으며, 1919년 이전 국가원수가 법적으로 전쟁의 책임을 진 적은 없었다.¹⁹

1919년 베르사이유조약은 대중민주주의에 의해 협상된 최초의 평화조약이나, 독일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응징함으로써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통적 현실주의자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정부의 지도자들이 독일에 적대적인 국내여론의 압력에 밀려 화해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²⁰

한편, 패전에 대한 배상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1905년 러·일 전쟁후 러시아는 일본의 배상금 요구를 재정문제와 강대국의 체면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러시아는 배상금을 물게 되느니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하였다.

¹⁷– Towle, *Democracy and Peacemaking*, p. 88.

¹⁸– Steiger, “Peace Treaties from Paris to Versailles,” p. 86.

¹⁹– *Ibid.*, p. 86.

²⁰– Norrin M. Ripsman, *Peacemaking by Democracies: the Effect of State Autonomy on the Post-World War Settlements*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p. 92.

4. 2차 세계대전의 유산과 현실정치

나폴레옹 전쟁 이후 계속된 응징의 전통은 2차 세계대전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였으나, 냉전이라는 현실정치의 벽은 원칙 없는 전후처리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은 타협에 의한 종전을 거부하고 응징을 위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다. 1940년 프랑스 점령 후 히틀러가 휴전을 제의하였지만, 영국의 처칠 수상은 반드시 독일을 징벌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루즈벨트 미대통령 역시 1943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외에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2차 세계대전 후 전쟁법정은 이전시기와 구별되는 몇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평화를 위협한 범죄’를 재판에 붙여, 전범들을 법적으로 처벌하였다. 재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연합국간에 처음부터 의견이 일치한 것은 아니었으나, 침략전쟁을 법적 근거를 갖고 단죄하는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영국과 러시아가 동의하였다.²¹ 연합국의 국제군사재판에서 전범들은 세 종류로 분류되었는데, A급 전범은 국제조약을 위반하여 침략전쟁을 기획, 시작, 수행한 사람들(평화에 반한 죄), B급 전범은 전쟁 법과 전쟁관습법을 위반한 사람들(통상적인 전쟁범죄), C급 전범은 상급자의 명령에 의하여 고문과 살인을 직접 행한 사람들(인도에 반한 죄)이었다.

²¹ 러시아는 재판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였고, 영국도 한때 전범들을 재판없이 총살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법절차 하에서 증거에 입각하여 죄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믿는 미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전범재판소가 설립되었다. 미국은 재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연방대법원판사인 잭슨(Robert Jackson)을 수석검사로 임명하였다. Benjamin Ferencz, “Nuremberg: A Prosecutor’s Perspective,” Belinda Cooper, ed., *War Crimes: The Legacy of Nuremberg* (New York: TV Books, 1999), pp. 32–33.

이 중 뉘른베르크와 동경에 설치된 국제군사재판소에서는 A급 전범에 대한 재판이 열려 전쟁지도자를 처벌하였다. 뉘른베르크 전범법정에서 전쟁 중에 일어난 잔혹행위에 대하여 독일정부가 아닌 개인에게 책임을 물었다. 전쟁에 대하여 집단적 책임이 아닌 개인적 책임을 물은 것은 뉘른베르크 법정이 역사상 처음이었다. 뉘른베르크법정 설립의 기초가 된 런던헌장은 모든 개인에게 면죄부를 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국가의 행위와 상급자의 명령을 따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기를 거부하였다.²² 22명(1명은 궐석재판)의 나치 고위 관료와 장성이 반평화죄(crime against peace) 음모가담, 침략전쟁(wars of aggression) 기획 및 수행, 통상적인 전쟁범죄(war crimes), 반인도죄(crime against humanity) 등 4개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반인도죄에는 전쟁 이전 독일정부의 자국민에 대한 박해와 인종청소도 포함되었다. 재판결과 3명은 무죄평결을 받았고, 유죄평결을 받은 19명 중 12명에게 사형, 7명에게 10년 부터 종신형이 선고되었다. 주요 전범이외에 약 2백 명이 뉘른베르크 미군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고, 또 다른 1,600명이 전통적인 군사재판의 피고가 되었다.

개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나치정당, SS, 게슈타포 같은 조직들이 범죄집단으로 간주되었고 백만 명 이상이 숙청대상이 되었다. 점령군에 대한 저항과 분파행동을 우려하여 범죄혐의 없이 3십만 명이 3년간 구금되었으며, 많은 나치 지지자들이 벌금, 재산몰수, 공직 추방, 사업 폐쇄 등 다양한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²³

²² 런던헌장은 주요 승전국인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 의해 합의되었다. Bernard D. Meltzer, "Remembering Nuremberg," Belinda Cooper, ed., *War Crimes: The Legacy of Nuremberg* (New York: TV Books, 1999), p. 20.

²³ Jorg Friedrich, "Nuremberg and the Germans," Belinda Cooper, ed., *War Crimes: The Legacy of Nuremberg* (New York: TV Books, 1999), p. 90.

동경 극동국제군사재판소(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of Far East, IMTFE)에서는 28명의 피고가 A급 전범자로 정식 기소되었다.²⁴ 이 중 재판을 받은 25명에 대하여 전원 유죄를 인정하여, 7명 교수형, 16명 종신형, 1명 징역 20년, 1명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1945년과 1951년 사이, 연합국은 920명의 일본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3천여 명을 징역에 처했다. 2백 3십만 명이 조사받고 이중 210,287명이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전쟁지도자에 대한 처벌과 수많은 관련자에 대한 숙청과 함께 연합국은 정치교육을 통해 과거의 이념과 정책을 부정하고 새로운 이념과 제도가 이식되도록 하였다. 언론, 서적, 방송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세계평화를 위협한 범죄’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보여준 뉴른베르크와 동경 전범재판의 정신은 이후 냉전이라는 현실정치에 눌려 실현되지 못하였다. 냉전이 급속히 심화되면서 미국은 일본과 독일에 대한 정책을 극적으로 전환하여 처벌을 완화하였다. 서독과 일본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소련을 봉쇄하는 가장 중요한 전초기지가 되었다. 서독군이 미군에 의해 재건되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편입되었으며, 동독군은 소련에 의해 재건되어 바르샤바조약군에 편입되어 대결하게 되었다. 평화조약 체결과 동시에 소련을 겨냥한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되었다. 미국에 의해 현상수배된 독일과학자가 소련의 무기개발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논란 끝에 천황에게 전쟁책임을 묻지 않고 천황제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냉전기간 중 베트남, 형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알제리아, 캄보디아, 아

²⁴ 4명의 수상, 3명의 외상, 4명의 육상, 2명의 해군상, 6명의 장관, 2명의 대사, 3명의 재계 지도자, 1명의 귀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프가니스탄, 쿠바, 그레나다, 파나마, 니카라과 등 많은 전쟁에서 일어난 반평화, 반인도 범죄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처벌의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승자와 패자가 없는 한국전쟁에서 침략행위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행위는 유엔결의에 의해 침략을 격퇴하고 평화를 회복할 수 있었으나, 반인류 범죄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른베르크 전범처리는 많은 유산을 남겨놓았다. 침략전쟁은 범죄라는 뉴른베르크의 원칙이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이 채택되고, 인권재판소(Court of Human Rights, Strasbourg)가 설치되었다. 뉴른베르크의 정신은 냉전이 끝난 후 국제사회가 전범처리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²⁵ 전쟁범죄에 대하여 지리적 사법관할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국제법정에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국민에 대한 범죄 역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로 간주되었다.²⁶ 전범재판은 승자에 의한 패자의 단죄일 뿐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²⁷ 뉴른베르크는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을 구별하였다. ‘침략전쟁’ 혹은 ‘평화에 반한 죄’를 가장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 반면, 이에 대항한 연합국의 전쟁에 대하여는 면죄부를 주었다. 실제로 연합국의 전쟁에 대하여는 한건의 재판도 없었다.

1993년 구유고슬라비아에서 잔혹행위의 재판을 위해 임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Former Yugoslavia, ICTY)

²⁵– Ferencz, “Nuremberg: A Prosecutor’s Perspective,” p. 35.

²⁶– Ruti Teitel, “Nuremberg and its Legacy: Fifty Years Later,” Belinda Cooper, ed., *War Crimes: The Legacy of Nuremberg* (New York: TV Books, 1999), pp. 49–52.

²⁷– 독일 도시에 대한 영국의 폭격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으며, 처칠 수상은 연합국이 패배하였다면 자신이 교수형을 받았을 것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하였다.

가 설립되고, 1994년 르완다에서 집단학살(genocide)과 반인도 범죄에 대한 재판을 위해 임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설치되었다. 2003년에는 우여곡절 끝에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설립되어, 국제인권과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하여 개인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²⁸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죄, 반인도 범죄, 전쟁범죄와 같은 가장 심각한 범죄혐의자만을 재판하는 독립적인 상설재판소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1998년 로마에서 개최된 유엔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법령이 채택됨으로써, 유엔기구가 아닌 조약에 근거한 독립기구로서 설립되게 되었다.²⁹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와 개별국가의 관할권 문제,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찰관이 국가의 정보를 획득하고 조사하는 문제, 국제형사재판소와 유엔과의 관계 등에 대한 우려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을 유엔안보리의 통제하에 두길 원하였다. 특히, 미국은 항구적인 전쟁법정이 미국의 군사작전을 감시감독하고 미국정부를 곤란하게 만들 가능성과 미국 군인이나 국민이 국제형사

²⁸ 국제형사재판소와 유사한 기구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가 있으나,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에 의해 제소된 문제에 국한해 관할권을 행사하며, 국제인권과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하여 개인을 재판하는 권한이 없다.

²⁹ 1950년대 유엔총회의 위임하에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는 뉴른베르크 원칙에 입각하여 상설국제형사재판소를 창설하기 위한 법령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냉전으로 중단되었던 동위원회의 활동은 1989년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요청을 받은 유엔총회의 위임에 의해 재개되었다. 수년간의 예비회의를 거쳐 1998년 로마에서 개최된 유엔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법령이 채택되어 유엔기구가 아닌 조약에 근거한 독립기구로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게 되었다. Donna K. Axel, "Toward a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elinda Cooper, ed., *War Crimes: The Legacy of Nuremberg* (New York: TV Books, 1999), pp. 313-321.

재판소의 피고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조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³⁰

³⁰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정에 미국의 반대에 동참한 국가는 아이로니칼하게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정책에 결코 우호적이라고 할 수 없는 중국, 인도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라크, 리비아, 이란, 쿠바 수단 등이었다. Bob Dole, "The Case for a Proper Legacy: From Tokyo to Cambodia," Tim Maga, *Judgement at Tokyo* (Lexington: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01), pp. 143-144.



평화조약의 사례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평화조약 없는 러·일관계 정상화

2차 세계대전을 종료하기 위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52개국이 참가하여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를 제외한 49개국이 1951년 9월 8일 서명함으로써, 미군의 일본 점령이 종료되고, 일본은 주권과 독립을 회복하였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Peace Treaty between the Allied Powers and Japan, San Francisco, September 8, 1951)은 패전국으로서 일본에게 영토할양, 전쟁배상 등의 책임을 묻고 있으나, 전쟁배상과 관련 구체적인 액수를 요구하지 않고 추후 양자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패전국에 대해 관대한 조약내용은 아시아에서 냉전의 심화로 인해 일본을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반공전선의 주요 동맹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주요 참전국인 소련과 중국이 서명하지 않았다. 중국의 경우 1949년 공산화 이후 대표자격 문제로 대만정부나 공산당정부 모두 초청받지 못하였다. 일본은 대만의 국민당 정부와는 1952년 4월 28일 평화조약을 체결하였고, 본토의 공산당 정부와는 1978년 8월 12일 북경에서 평화조약(Treaty of Peace and Friendship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Japan)을 체결하였다.³¹

소련은 보다 복잡한 경우이다. 소련은 1945년 2월 알타협정에 의해서 대일전에 참가를 결정하고 8월 10일 선전포고를 하였으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러시아는 영토문제를 이유로 서명하지 않았다. 러·일간에는 아직까지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으나, 1956년 국교정상화 이후 양 국관계를 관리·발전시켜왔다.

1950년 2월 알타회담에서 쿠릴열도는 소련에 할양되기로 약속되었다.

³¹ 인도와는 1952년 6월 9일 강화조약에 서명하였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나, 쿠릴열도의 개념으로 북방 4개도서(하보마이 군도, 쿠나시리 섬, 시코탄 섬, 에토로후 섬)가 포함되는 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고 이를 명시하지 않은 채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미국의 평화조약 초안은 일본이 남부사할린과 쿠릴열도를 포기한다고 하였지만, 이 영토가 소련에 할양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소련에 할양된다는 것을 명기하기를 원하였던 소련의 제안은 검토되지 않았다.³² 소련은 미국이 마련한 평화조약 초안이 소련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무를 구체화하지 않음으로써 소련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고 알타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평화조약과 함께 미·일 안전보장조약 체결이 진행되자, 소련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서명을 거부하였다.³³ 미·일 안보조약은 소련을 겨냥한 것으로 일본내 미군의 주둔을 규정하고 일본 내의 기지를 제3국에 대여할 경우 미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비롯하여 일본에 대규모 내란이나 소요가 발생하여 일본정부의 요청이 있거나 일본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때 미군이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불평등 조약이었다.³⁴

‘북방도서’를 둘러싼 논쟁은 ‘북방도서’를 되찾으려는 일본의 의도와 함께 미국의 정책변화에 기인하였다. 1948년 들어 동서냉전이 심화되고 중국에서 국민당정부가 붕괴위기에 몰리자, 미국의 대일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된다.³⁵ 미국무성의 케난(George Kennan) 정책실장은 일본

³² Boris Slavinsky, “The Soviet–Japanese Postwar Peace Settlement in Retrospect,” Gibert Rozman, *Japan and Russia: The Tortuous Path to Normalization 1949–1999*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p. 43.

³³ Haruki Wada,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the Definition of the Kurile Islands,” Gibert Rozman, *Japan and Russia: The Tortuous Path to Normalization 1949–1999*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p. 28.

³⁴ <http://100.naver.com/100.nhn?docid=67201> (검색일: 2007년 1월 20일).

³⁵ 쿠릴열도의 개념과 관련 미국무성은 1947년 3월 평화조약 1차 초안에서 알타협정의 합의에 근거하여 일본이 캄차카와 훗가이도 사이에 위치한 쿠릴열도에 관한 주권을

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강력한 전초기지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민주주의보다 경제회복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캐난은 일본과의 평화조약은 응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1950년 한국전쟁은 아시아에서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고, 미국은 아시아에서 알타협정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였다.

러시아와 일본은 1956년 10월 19일 영토문제를 뒤로 미룬 채, 관계정상화에 합의하였다.³⁶ 공동성명에서 “소련은 일본의 희망과 이익을 고려하여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군도를 일본에 할양하는 데 동의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할양은 러·일간 평화조약이 체결된 후에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러·일관계 정상화이후 양국관계는 급속히 발전하였다. 무역량은 거의 매년 두배씩 증가하여, 일본은 서방국가 중 러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³⁷

그러나 1960년 소련은 시코탄과 하보마이의 할양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이는 미·일안보조약에 대한 보복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소련 국내정치와 국제환경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미·소관계가 긴장된 상황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에 두 개의 도서를 양보한다는 것은 후르시초프의 리더십의 취약성을 반증하는

소련에게 할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동년 8월의 2차 초안에서는 일본인의 희망을 받아들여 쿠릴열도를 에토로후 해협의 동북부에 있는 섬들로 규정함으로써,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쿠나시리, 에토로후는 일본의 영토로 포함시켰다. Wada,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the Definition of the Kurile Islands,” pp. 19–23.

³⁶ 러·일 국교정상화 과정은 1953년 8월 8일 소련의 말렌코프 수상이 최고소비에트에서 소련은 일본과 관계 정상화 준비가 되어있다고 밀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일본의 카츠오 외상은 소련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을 인정하면 협상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1955년 9월 일·러 양측은 평화조약을 추진하였으나, 영토 문제로 인해 협상은 1956년 3월 결렬된 바 있다. Slavinsky, “The Soviet-Japanese Postwar Peace Settlement in Retrospect,” p. 55.

³⁷ Ibid., p. 44.

것이라고 생각하였다.³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현실정치가 평화조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 주요 참전국인 소련과 중국이 서명하지 않은 기형적인 조약이었다. 미국은 전시 동맹이었던 소련의 요구를 묵살한 채, 전시에 적이었던 일본과의 동맹관계 수립을 위해 일본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켰다. 일본은 이후 중국과는 양자조약을 체결하였으나, 러시아와는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이후 일본은 “북방도서”가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근거로 이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소련은 알타협정에서 쿠릴열도 문제는 명백히 해결되었고, 어떠한 영토분쟁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일본은 국교정상화를 이루었다.

2. 베트남 평화협정: 미국이 승리하지 못한 전쟁의 평화조약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하고 인도차이나에서 물러나자, 1945년 9월 2일 베트남은 호치민의 지도하에 독립(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을 선언하였다.³⁹ 그러나 이전의 통치자였던 프랑스가 돌아와 남부 베트남을 점령하고 베트남을 다시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8년간 전쟁을 수행하였다. 프랑스는 베트남의 저항에 군사적, 도덕적으로 침폐하고 철군을 결정하였다. 1954년 영국과 소련이 소집한 제네바회의(Agreement on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in Vietnam, 1954년 7월 20일)에서

³⁸ Alexei V. Zagorsky, “Reconciliation in the Fifties: The Logic of Soviet Decision Making,” Gibert Rozman, *Japan and Russia: The Tortuous Path to Normalization 1949–1999*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pp. 65–67.

³⁹ 일본의 항복 당시 베트남에는 Bao Dai 황제하의 꼭두각시 정부가 있었으나, 일본의 지지가 사라지자 베트남은 곧 무정부상태에 돌입하였다.

프랑스와 북베트남은 17도선을 경계로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정전에 합의하였다. 또한 제네바회의의 최종선언문(Final Declaration of the Geneva Conference)은 2년 후인 1956년 7월 베트남총선을 촉구하였다.

제네바합의는 인도차이나 주둔 프랑스군 사령관, 북베트남인민군 사령관, 북베트남 국방차관 3명이 서명하였으며 남베트남은 프랑스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지 못하였다. 한편 최종선언문은 캄보디아, 북베트남, 프랑스, 라오스, 중국, 남베트남, 소련, 영국, 미국 등이 참가하였으나, 누구도 서명하지 않고 구두합의만 하였다. 결국 1956년 베트남총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베트남사태는 1956년 5월 프랑스가 철군한 이후 미국이 책임을 맡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하였다.

미국이 프랑스의 베트남 재식민지 정책을 처음부터 찬성한 것은 아니었으나, 유럽에서 냉전이 심화되면서 프랑스를 지지하게 되었다. 우선 유럽에서의 반공전선 형성에 프랑스가 필수적이었으며, 중국이 공산화되자 아시아에서 반공국가의 수립이 절실해졌고, 미국의 동맹인 프랑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었다.⁴⁰ 미국은 군사적으로 프랑스를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재정적으로는 프랑스 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겼다.⁴¹ 1954년 4월 5일 아이젠하워 미대통령은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타이완,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가 연쇄적으로 공산화된다는 ‘도미노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1960년대 미국의 전면적인 베트남 개입을 촉구하는 이론이 된다.

1961년 케네디 정부에서 시작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최대 54만 명이 주둔하였으며, 연인원 2배 5십만 명이 월남전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미국

⁴⁰— David L. Anderson, *The Columbia Guide to the Vietnam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pp. 26–27.

⁴¹— 아이제하워 정부시절 미국은 최대 740명이 넘지 않는 군사고문과 훈련을 위해 미군을 주둔시켰으나, 남부 베트남군의 급여와 장비 등을 위해 85%의 재정을 책임졌다.

은 군사적 실패와 국내의 반전여론에 밀려 1968년 5월 북베트남과 평화 회담을 시작하였다.

미국측 협상대표인 키신저(Henry Kissinger)는 베트남 평화협정을 위해서 하노이-워싱턴, 사이공-NLF, 국제포럼 등 3개의 분리된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⁴² 회담은 미국과 북베트남(DRV) 뿐만 아니라 남베트남(RVN), 그리고 남베트남임시혁명정부(PRG)의 4자회담 형식하에 실질적으로는 하노이-워싱턴의 양자회담으로 진행되었다.⁴³

미국이 참전한 대부분의 전쟁에서 미국은 평화조건을 요구하였으나, 월남전에서는 전쟁의 패배로 인해 미국은 그럴만한 입장이 아니었다. 오히려 북베트남이 평화협정 과정에서 미국에게 전쟁배상을 요구하였으며, 미국은 전쟁배상은 거부하였으나 구두로 인도차이나 재건프로그램에 일정액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⁴⁴

파리 평화협정에서 적대행위의 종식과 남부베트남에서의 북베트남군과 미군의 철수가 합의되었다. 이 밖에 베트남 국민의 근본적인 민족권리, 포로송환, 남부 베트남 국민의 자결권, 남북의 합의하에 단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규정하고 있다. 파리 평화협정에 의거 1973년 3월 2일 파리에서 개최된 ‘베트남 국제회의’에서 캐나다, 영가리, 폴란드, 인도네시아가 참가하는 국제통제감독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s of

⁴²– Towle, *Democracy and Peacemaking*, p. 171.

⁴³– 북베트남의 협상대표인 Le Duc Tho는 남베트남에서 티우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는다면 사이공 정부와 협상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주은래는 티우 정부와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득하였다. 주은래 수상은 중국이 과거 국민당과 대화하였고, 북한이 1972년 박정희 정부와 대화한 것을 예로 들었다. Ang Cheng Guan, *Ending The Vietman War: The Vietnamese Communists' Perspective* (London: Routledge Curzon, 2004), p. 103.

⁴⁴– 1972년 8월 북베트남 협상대표인 Le Duc Tho는 키신저 미국대표에게 80억불의 전쟁배상금을 요구하였고, 이중 45억불은 북베트남에 35억불은 남베트남에 할당할 것을 요구하였다. *Ibid.*, p. 105.

Control and Supervision)를 구성하여 정전 조건과 평화를 감독하도록 하였다.⁴⁵

파리 평화협정으로 미군은 철수하고 미군포로는 송환되었으나 베트남에서 전투는 계속되었다. 파리 평화회담이 진행되면서 미군은 감군을 진행하여 1973년 1월 27일 파리 평화협정에 서명할 때는 2만 명만이 남았으며 1973년 5월까지 철수를 완료하였다.⁴⁶ 미국의 공군과 지상군이 철수하고 난 후 미군이 남겨둔 장비는 남부베트남군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에게 군사적 지원의 지속을 약속하였으나 미국 국내여론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미의회는 미국의 대베트남 군사지원을 대폭 삭감하기 시작하였으며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무기력해진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에 집중할 수 없었다. 마침내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은 사이공을 함락시키고 베트남은 통일되었다. 베트남이 통일된 후 통일베트남 정부는 미국과 국교를 단절하였으나, 29년이 지난 1994년 양국은 국교정상화에 합의하였다.

베트남 평화협정은 국제사회에서 평화협정 준수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 평화협정은 종전, 평화관리, 통일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이며 포괄적인 조약이다. 그러나 조약내용의 구체성과 섬세함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평화협정은 실패로 끝났다. 파리 평화협정과 이를 보장하는 국제감독위원회까지 구성되었으나 전쟁은 계속되었다. 특히 파리 평화협정에서 규정한 종전 후 남베트남에서 민주적 자유,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얼마나 허망한 기대였나를 알 수 있다. 또한 1954년 제네바협의는 군사협정으로 인도차이나 주둔 프랑스 사

⁴⁵ 동 회의에는 남북베트남, 캐나다, 중국, 미국, 프랑스, 베트콩, 형가리, 인도네시아, 폴란드, 영국, 소련이 참가하였다.

⁴⁶ 1968년 말 536,100명이었던 미군은 1969년 말 475,200명, 1970년 말 334,600명, 1971년 말 156,800명, 1972년 말 24,200명으로 급속히 감소되었다.

령관과 북베트남 인민군사령관, 북베트남 국방차관 3명이 서명하였으나, 1973년의 베트남 평화협정은 포괄적인 정치·군사협상으로 남북 베트남,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미국이 서명하였다. 남베트남은 1954년 제네바 협의의 서명 당사자가 아니었으며 북베트남이 강력한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73년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정전협정 당사자와 평화 협정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였다.

3. 보스니아 내전과 데이튼 평화협정: 내전과 현실정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의 6개 공화국과 보이보디나와 코소보 2개의 자치주로 구성되었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은 각 공화국내 반세르비아 민족주의로 인해 해체되면서 인종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6월 25일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언하자, 세르비아는 즉각 군사 공격을 감행하였다. 민족적 동질성이 강한 슬로베니아 보다는 세르비아 민족이 인구의 10퍼센트를 차지하는 크로아티아의 독립에 대해 세르비아는 보다 격렬히 대응하였으나, 이들 두나라는 비교적 용이하게 독립을 이룰 수 있었다.⁴⁷

한편, 보스니아와 자치주의 지위를 상실한 코소보 지역에서 인종갈등은 내전으로 발전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초래하였다. 보스니아는 4백 4십만 명의 인구 중 자신들을 종교적으로 보다는 민족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회교도들이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세르비아인이 31퍼센트, 크로아티아인이 17퍼센트를 차지하였다. 1991년 3월 크로아티아와 세르

⁴⁷ 슬로베니아는 인국의 91%가 슬로베니아민족으로 구성되었으며, 역사적으로 세르비아가 영토를 주장할 근거도 없었다. 한편, 크로아티아는 1981년 인구센서스에서 4백 6십만 명 중 5십만 명이 세르비아민족이었다.

비아간에 보스니아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1992년 4월 7일 미국과 유럽이 보스니아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세르비아-몬테네그로로 구성된 신유고연방의 밀로셰비치(Slobodan Milosevic) 대통령의 무기 제공 등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는 회교도들에 대한 탄압을 시작함으로써 내전으로 발전하였다. 내전 초기 세르비아계는 보스니아 영토의 70퍼센트를 차지할 수 있었으며 회교도들을 몰아내고 신유고연방과 대(大)세르비아를 이루고자 하였다. 유혈사태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후 1995년 5월 마침내 나토군은 세르비아 군사거점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으며 11월 21일 데이튼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데 이튼 평화협정(Peace Agreements between Bosnia and Herzegovina, Croatia and the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Dayton, November 21, 1995)의 주요 내용은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나토군이 주축이 된 평화유지군이 보스니아로 들어갔다. 아울러 유엔임시행정청(UNMIBH)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보스니아 재건을 위해 들어갔다.⁴⁸

데이튼 평화협정에서는 2십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보스니아 내전에 집중한 나머지 코소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유고슬라비아의 해체로 인한 전쟁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된다.⁴⁹ 더욱이 코소보 사태의 핵심인물인 밀로셰비치는 데이튼 평화협정의 성공적 이행에 중심적 인물로 평가되었으며, 신유고연방은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빠르게 이루었다.

⁴⁸– 데이튼 평화협정 이행감시(고위대표부, 약칭 OHR), 법질서 유지와 사법체계 정비(UNMIBH), 선거 등을 통한 민주화제도 정착(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난민 치우개선(UNHCR), 평화유지활동(SFOR)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⁴⁹– Alex J. Bellamy, *Kosovo and International Society* (New York: Palgrave MacMillian, 2002), p. 38.



코소보는 2백만 주민의 90퍼센트가 알바니아인으로 1974년부터 자치를 인정받았으나 인구의 10퍼센트를 차지하는 세르비아인들이 알바니아 다수민족에게 박해를 받는다는 불평이 고조되면서 인종갈등이 시작되었다. 1987년 4월 코소보를 방문한 밀로셰비치는 세르비아민족 앞에서 “아무도 때리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감정적 연설을 통해 세르비아민족의 수호자로 평판을 쌓았다. 1989년 밀로셰비치는 ‘대세르비아 건설’이라는 민족주의적 가치아래 코소보의 자치권을 박탈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코소보 알바니아인은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요구하였고 1992년 마침내 코소보 공화국을 선포함으로써 알바니아계와 세르비아계 간의 빈번한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다. 세르비아가 보스니아 내전에 몰두하면서 잠잠하던 코소보사태는 1998년 세르비아가 코소보내 알바니아 게릴라에 대한 대적 공격과 ‘인종청소’로 인해 코소보 위기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⁵⁰

나토군은 코소보의 자치정부 인정과 코소보내 평화유지군의 주둔을 골자로 하는 랑부예 평화협정(Kosovo Peace Agreement, Rambouillet, 1999년 2월 23일)을 세르비아가 수용하기를 요구하였으나, 밀로셰비치가 이를 거부하자 나토군은 러시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의 결의 없이 1999년 3월 24일 세르비아에 공습을 단행하였다. 이는 나토 창설 이후 최초의 직접적인 대규모 무력개입으로써 코소보 사태는 지역분쟁에서 국제문제로 비화하게 되었다. 또한 1999년 5월 국제유고전 범재판소 ICTY는 밀로셰비치를 전쟁범죄, 집단학살죄, 반인도 범죄 혐의로 기소하였다.

1999년 6월 9일 세르비아는 나토군의 공습에 굴복하여 군사협정문

⁵⁰ 1999년 6월까지 세르비아계의 인종청소로 인해 85만 명의 알바니아계 코소보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고, 코소보에 남아있는 나머지 백만 명도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Military Technical Agree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and the Governments of the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and the Republic of Serbia, June 9, 1999)에 합의하였다. 군사협정문은 코소보로부터 세르비아군의 즉각 철수와 유엔평화유지군의 코소보 주둔을 골자로 하고 있는 정전협정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루 뒤엔 유엔안보리결의 1244에 따라 나토군이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되어 코소보에 주둔하게 된다. 평화유지군은 난민의 무사귀환, 코소보의 치안 유지, 자치정부 수립, 기간시설 복구 등을 관장하는 군사정부의 역할을 하였다.

밀로세비치는 2000년 대선 후 민중봉기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후 2001년 4월 세르비아경찰에 체포되어 네덜란드 해이그에 설치된 유고문제를 위한 임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r former Yugoslavia, ICTY)에서 전범재판을 받던 도중 2006년 3월 11일 감옥에서 사망하였다.

발칸사태는 내전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가 개입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르비아 내전이나 코소보 사태 모두 나토군의 공습에 의해 종식될 수 있었다. 또한 1999년의 군사협정문은 일종의 정전협정이나 이후 별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평화협정이 반드시 전쟁의 종식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발칸사태는 현실정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회가 코소보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데이튼 협정 다음해인 1996년 초로서, 주 관심은 인권문제 보다는 코소보 난민이 서유럽으로 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⁵¹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코소보는 유럽에 위치하고

⁵¹— Bellamy, *Kosovo and International Society*, p. 56.

있기 때문에 갈등의 규모에 비하면 서방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도 할 수 있다.⁵² 1995년 벨칸반도 안정에 주요한 파트너로서 인정받았던 밀로세비치가 4년후 전범으로 몰린 것은 국제정치에서 현실정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헤이그 전쟁법정은 2차 세계대전 후 세워진 동경과 뉴른베르크의 전쟁법정 후 반세기만의 전쟁법정으로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논의를 자극하게 되었다.

4. 종전선언 이후 끝나지 않는 이라크전쟁: 정권교체

이라크전쟁은 대량살상무기의 해체와 압제에 시달리는 이라크 국민 해방이라는 명분을 갖고 2003년 3월 20일 미군의 이라크 공격으로 시작되었으며,⁵³ 43일만인 5월 1일 부시 미대통령이 주요 전투의 종료를 선언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라크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이 체결된 적은 없다.

종전 선언 이후에도 게릴라전이 계속되어 전쟁기간 중 100여 명이던 미군의 사망자수는 끝없는 게릴라전으로 인해 4년이 지난 2007년말 4,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라크전쟁에서 미군이 바그다드를 함락하고 후세인정부가 붕괴될 때만 하더라도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것으로 보였던 이라크 국민들은 시아파와 수니파간에 극단적으로 대립하며 내전상태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2006년 12월 집행된 후세인의 처형은 이라크 내전을 더욱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다. 후세인의 죄명은 전쟁범죄가 아니라 후세인 집권 중 자행된 양민학살이었다.

⁵² Howard Clark, *Civil Resistance in Kosovo* (London: Pluto Press, 2000), p. 158.

⁵³ 이 밖에도 미국은 전쟁의 명분으로 이라크와 9.11 테러와의 연관성, 중동 민주화의 교두보 확보 등을 내세웠다.

이라크전쟁의 목적 중 하나는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고 미국에 우호적인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군 주도의 연합군은 후세인정권의 붕괴 후 이라크에 주둔하면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으며,⁵⁴ 단계적으로 주권을 이양하면서 새 정부의 구성과 방향을 주도하였다.

후세인 정권 붕괴 후 미군 점령하에서 연합군임시당국(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CPA)이 구성되었고, 미국이 임명한 최고행정관인 브레머(Paul L. Bremer)가 군정의 행정책임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연합군 임시당국은 종교와 인종을 고려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Iraq Interim Governing Council)를 구성하여 실질적 집행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⁵⁵ 과도통치위는 이라크 임시정부 출범때까지 임시헌법을 제정하며 주요 현안을 다루었으나 브레머 군정 최고행정관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종전 후 1년여가 지난 2004년 6월 11일 과도통치위원회가 마련한 임시헌법에 따라 2004년 6월 1일 이라크 임시정부가 출범하였으며,⁵⁶ 임시정부 출범과 함께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는 해체되었다. 2004년 6월 28일 임시정부는 미군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주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임시정부가 미국의 꼭두각시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였다.⁵⁷

⁵⁴– 미국은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고 미군철수를 요구하면 미군은 철수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지만 미국이 원하지 않는 한 그러한 요구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⁵⁵– 25인 위원은 인구별 분포에 따라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시아파 인사가 13명으로 가장 많고, 이라크 북부 국경지대에서 자치정부를 운영해온 쿠르드족과 후세인 시절 정권을 담당했던 수니파가 각각 5명씩, 그리고 기독교인과 투르크인이 각각 1명씩으로 구성됐다.

⁵⁶– 임시정부의 권력체계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 원칙을 수용했고 대통령 1명과 부통령 2명, 총리 1명으로 구성되었다. 대통령은 가지 알-야와르, 총리에는 이야드 알라위가 선출되었으며, 여성 6명을 포함한 32개 부처 장관이 임명되었다.

⁵⁷– 이라크 임시정부는 정규군과 경찰, 정보기관을 창설해 안보·치안 유지를 위한 기구를



이후 제헌의회 선거(2005년 1월 30일), 과도정부(Iraqi Transitional Government 2005년 5월 3일), 총선(2005년 12월 15일)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2006년 5월 20일 이라크 정부가 출범하였다.⁵⁸ 2006년 9월 7일 미군은 이라크에 해, 공군의 지휘권을 이양함으로써 이라크 자주권은 한 층 고양되었으나, 이라크 주둔 미군은 여전히 이라크 정부의 베품목으로서 정권의 안정을 지켜주고 있다.

종전 후 미국은 후세인 정부의 악정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민주주의의 정착을 교육하였으나, 전쟁의 당위성과 정권교체의 정당성, 미군 주둔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200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참패로 이어졌다. 초당파기구 이라크연구그룹(ISG)은 2008년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를 권고했고,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도 철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ISG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라크 유혈사태 차단을 위해 2007년 초 3만 명 추가 파병 계획을 발표하는 등 탈출구를 찾지 못해 혼매는 형국이다.

이라크 전쟁은 국제사회의 지지는 물론 미국내 지지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 행정부가 불충분한 근거(대량살상무기 해체)를 갖고 시작하였다. 정전협정도 평화협정도 없이 끝난 전쟁은 끝없는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말았으며, 향후 이라크 운명은 미국의 의도에 좌우되게 되었다.

I
II
III
IV
V

설치하고 그 동안 불가능했던 대사 등 외교사절을 파견하고 외국 대사를 접수해 국제 사회에서 이라크를 대표하였다.

⁵⁸- 2006년 2월 12일 이라크 과도정부의 이브라힘 알 자파리 총리가 첫 공식 총리로 당선되면서 정부구성 작업이 시작되었으나, 시아파와 수니파간 종파분쟁이 심화되면 서 자파리 총리가 퇴진하고 누리 알 말리키 총리체제의 주권 정부를 출범시켰다.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 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1. 평화조약 체결시 일반적 논쟁

가. 패전국 정부는 늘 사악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부인가?

프랑스 혁명이후 전쟁은 범죄로 규정되었으며, 범죄가 있는 한 누군가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승전국은 패전국에게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고,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영토를 빼앗기도 하였다. 특히, 승전국은 패전국의 적대행위는 패전국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며 패전국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믿는다. 따라서 사악한 패전국 정부가 모든 전쟁의 책임을 지고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간주된다.

18세기 이후 서구민주국가들은 외교정책에 자국민의 여론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평화조약 체결시 국민의 의사를 더 반영할수록 패전국 정부에게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더 묻게 되었다. 민족국가의 수립이후 국가간 전쟁에서 민족주의가 고취되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며, 국민들은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요구한다.

나폴레옹 3세나 히틀러 같이 많은 전쟁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호전성을 고취시킨 것은 사실이나, 역사적으로 이미 국민들 속에 전쟁의지가 잠재되어 있었으며 국민의 지지를 받은 패전국 정부도 많이 있었다.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하여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프랑스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⁵⁹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 대한 가혹한 응징이 독일국민의 반감을 초래하고 히틀러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패전국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 응징과 평화조약은 적대관계에 대한 일시적인 미

⁵⁹—Towle, *Democracy and Peacemaking*, p. 187.

봉책으로서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나. 패전국의 정권교체는 정당한 것인가?

패전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악한 정부라는 믿음은 패전국의 정권교체를 합리화시키는 근거로 제시되나, 승전국이 패전국의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문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된다. 승전국의 의도에 의한 정권교체가 패전국 국민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주권의 원칙에 배치되며 실질적이지도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정권교체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일찍이 나폴레옹전쟁 시기 영국의 휘그당과 토리당의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⁶⁰ 1814년 휘그당은 집권 토리당이 프랑스혁명에 개입하여 부르봉왕조를 복귀시키려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 휘그당은 나폴레옹이 루이 18세보다 프랑스국민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믿었으며 영국이 루이 18세를 프랑스국민의 뜻에 반하여 왕위에 오르게 한 것을 비난하였다. 휘그당은 자신의 정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프랑스 영토에 점령군을 주둔하는 것에 대하여도 자연된 적대감이 훗날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그러나 토리당은 나폴레옹이 권좌에 있는 한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믿었다.

1차 세계대전 후에는 패전국에 대한 정권교체가 당연시되었다. 특히, 독일의 호엔촐레른과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를 비민주적이라고 여기며 반감을 갖고 있었던 미국과 영국은 주저 없이 정권교체를 추진했다. 전쟁은 범죄로 간주되었으며 빌헬름 2세를 범죄행위로 기소하기도 하였다. 2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의 정권교체는 더욱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⁶⁰— Towle, *Democracy and Peacemaking*, pp. 13–19.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은 유대인, 중국인, 폴란드인에 대한 독일과 일본의 가혹행위로 인해 전쟁 범죄인들을 반드시 응징해야한다고 믿었다. 독일, 이태리, 일본 등 주축국에서의 정권교체는 물론 전쟁지도자에 대한 처벌이 뒤따랐다.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자살과 함께 총통제가 막을 내렸으며 이태리에서 1946년 선거에 의해서 군주제가 폐지되었다. 일본천황은 전후 안정을 바라는 미국의 정책 덕에 전쟁범죄의 책임은 피할 수 있었지만 명목상 국가 원수의 지위로 격하되었다.⁶¹

그러나 정권교체에 대한 두려움이 전쟁을 장기화시키거나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항복을 지연시킨 것은 천황의 안전에 대한 우려에 기인하였다. 패전국에서의 정권교체는 그 나라 국민이 지도자를 반대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패전국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새 정부를 출범시킬 경우, 그 정부는 장기적으로 붕괴하고 이전의 지도자가 복귀될 수도 있다.⁶² 역사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강요된 정권교체는 잠재적인 적대행위를 장기화시킬 뿐이었음을 알 수 있다.⁶³ 정권교체는 패전국 정부하에서 억압되었던 국민의 희망과 일치하거나 이들이 패전후 급격히 견해를 바꿀 때, 비로소 정권교체는 민주주의 원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⁶¹— 일본천황의 전쟁범죄에 대하여는 연합국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전후 일본의 조속한 안정을 바라는 맥아더 사령관은 천황의 몰락은 일본의 몰락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맥아더는 천황이 신으로 숭배되길 하였으나 명목적인 지위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중국, 필리핀,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천황이 명목적 지위라는 맥아더 사령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히로히토 천황은 재판기간 동안 한 번도 전범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Tim Maga, *Judgement at Tokyo* (Lexington: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01), pp. 35–36.

⁶²— Towle, *Democracy and Peacemaking*, p. 187.

⁶³— 미국의 이란, 베트남, 파나마, 니카리瓜 정권교체, 소련의 체코, 헝가리, 아프가니스탄 정권교체가 좋은 예이다.



다. 패전국에서 재교육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패전국 정부가 자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국민의 마음을 변화 시키기 위한 재교육이 필요 없지만, 이들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면 정권교체와 함께 대대적인 재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독일에서는 재교육으로 1차 대전 후 군국주의가 퇴조하였고 2차 대전 후에는 히틀러에 대한 혐오감이 만연하였다.

1919년 파리 평화조약은 재교육에 실패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국민은 파리 평화조약에 대해 분개했으며 연합국은 파리조약을 준수 하지 못하였고 독일에 대해 1930년대 유화책을 쓰게 이르렀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 대한 재교육 역시 실패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일본인들은 미군점령에 대하여 협조적이었으며 군국주의에 대한 심판이 새로운 일본과 새로운 미·일관계를 위한 첫 단계라고 믿었다. 그러나 또 다른 많은 일본인들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이 대량학살 범죄자를 심판하는 것이었던 데 비해 동경 전범재판은 태평양전쟁 초기 서유럽과 미국의 식민지에서 일본의 승리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하였다. 즉, 동경 전범재판은 인종 차별적인 승자의 재판이라고 인식하였다.⁶⁴ 오늘날 일본정부는 교과서 검증제도를 통해 학생들을 ‘서구의 해석’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일본의 전후세대는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저지른 잔혹행위에 대한 알지 못하고 있다.⁶⁵ 일본의 역사왜곡, 신사참배 등은 주변국과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 이라크에서의 재교육 역시 성공적이 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패전국 정부도 자국민의 지지를 받았을 수 있다는 주장은 패전국

⁶⁴ Maga, *Judgement at Tokyo*, p. 4.

⁶⁵ *Ibid.*, p. 6.

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유하였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히틀러의 독일과 후세인의 이라크 정부가 자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는 주장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사란스키(Natan Sharansky)는 비민주적 사회에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신봉하지 않지만 체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따를 위험을 감수하기 두려운 “이중행동자(doublethinkers)”가 많다고 주장한다.⁶⁶ 또한 이 세상은 자유사회와 공포사회로 양분되어 있으며 중간지대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유사회는 체포, 투옥, 육체적 해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 없이 광장 한복판에 나가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사회라고 정의한다.

라. 평화조약의 준수를 보장할 수 있는가?

역사적으로 평화조약은 체결 자체보다 이를 어떻게 준수하는가가 훨씬 더 어려운 과제였다. 따라서 평화조약을 체결하는過程, 조약 당사자, 인준, 보장장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실질적인 평화조약(peace treaties) 이전에 정전협정(armistices)이나 예비평화협정(preliminary peace agreements)이 맺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정전협정은 일반적으로 군사령관들 간에 맺어지는 것으로 인준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예비평화협정은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으로 인준을 필요로 한다. 예비평화협정과 평화조약간에는 상황에 따라 시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평화조약은 두 교전국간의 양자협상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양자협상 혹은 다자협상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비교전국인 제3자가 평화조약

⁶⁶—Natan Sharansky with Ron Dermer, *The Case for Democracy: The Power of Freedom to Overcome Tyranny & Terror*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p. 44.

에 포함되기도 한다. 평화조약에 참여하는 제3자는 평화조약 이후의 환경의 변화를 인정하고 평화협정의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조약당사자의 선정 문제 이외에도 조약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고안되었다. 웨스트팔리아조약 이전 평화조약이 군주간의 사적 조약일 때는 귀족, 성직자, 삼부회 등에 의한 인준, 선서, 인질 등이 조약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19세기 들어 조약은 이전과 같이 국가수반의 전권위임대사에 의해 교섭되었다. 그리고 종종 국내법에 의해 인준을 필요로 하였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상원, 프랑스에서는 의회, 독일에서는 대통령이 조약을 인준한다. 그러나 중세에 비해 인준은 의무가 아니었으며 인준거부가 적대행위로 간주되지도 않았다. 전권위임대사가 기본적인 지침을 받고 나가기는 하였으나 자세한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었으며 국가수반을 대신하지 않았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재량권을 갖고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였다.

토인비(Arnold Toynbee)는 조약은 주권국가간의 계약으로 우월한 힘을 갖고 있는 항구적인 권위기관이 없이는 주권국가의 조약 준수가 보장될 수 없다고 보았다.⁶⁷ 오늘날 핵 시대에서는 인류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 세계국가의 수립이 필수적이나, UN과 같은 국제기구는 경제력, 책임, 국력, 인구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표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국가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핵의 시대에 세계국가의 수립은 무력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며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토인비는 핵무기 시대에서 돌이켜 볼 때 나폴레옹이 세계를 통일했다면 세계는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라고 말할 정도였다.⁶⁸

⁶⁷— Toynbee, “Anarchy by Treaty, 1648–1967,” p. xxxviii.

⁶⁸— *Ibid.*, p. xxiv.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의 특수성

가. 위기의 정전협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전쟁이 끝나고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반세기 이상 지난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평화협정이 정전협정 직후 전쟁을 종식시키는 군사적인 것을 목표로 하지만, 한반도의 경우 군사적 성격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정전협정을 뒤따라야 될 정치회담의 관점에서 보면 정전협정은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지난 50여년간 남북은 상대방의 수많은 정전협정 위반사례를 제기하였다. 1968년 김신조 청와대 습격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푸에블로화 나포사건, 1969년 미 EC-121 격추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사건, 1999년과 2002년의 서해교전 이외에도 백만건에 이르는 크고 작은 위반사례가 있었다.⁶⁹

특히, 1990년대 들어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을 요구하며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는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전체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⁷⁰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참석거부(1991.3), 군사정전위에 북한측 대표(1994.4)와 중국측 대표 철수(1994.12), 군사정전위를 대체하는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설치(1994.5)와 북·미 장성급 회담 요구,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체코대표단(1993.4)과 폴란드대표단(1995.2) 철수 등이 이어졌다.⁷¹

⁶⁹ 박현옥, “북한의 휴전협정 위반 반세기,” 『군사논단』, 통권 제16호 (한국군사학회, 1998), p. 24.

⁷⁰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북한의 제안은 남북평화협정체결(1962~1972), 북미 평화협정 체결(1974~1984), 남북불가침협정 및 북미 평화협정 동시체결(1984~1991) 등으로 변화되어 왔다. 강원식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5~8.

⁷¹ 박종철,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의 단계적 접근,”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

1994년 북한은 북·미 장성급회담 개최를 요구하였고, 1994년 4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제안한 데 이어, 1996년 2월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관리, 무장충돌과 돌발 사태 해결 등에 관한 북·미 잠정협정 체결을 제안하였다. 잠정협정의 이행을 위해서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북·미 군사 공동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여러 차례 변화하여 왔지만,⁷² 오늘날 북한 주장의 핵심은 북·미 불가침 협정 체결,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이라고 할 수 있다.⁷³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5조에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 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합의하였으나 정전체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 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9.19 북핵 6자회담 4차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체제에 관한 협상”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연계되어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하는 등 평화체제 추진의 본격화를 예고하였다.

과정』(북한연구학회 연말 학술회의 자료집, 2005. 12. 2), p. 125-126.
⁷²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는 남북불가침 실천, 북·미 평화협정체결, 남북한 군비축소, 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구 및 체제·법제도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대표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강원식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pp. 14-15.

⁷³ 위의 논문, p. 127.

나. 승자와 패자가 없는 평화협정

역사적으로 평화조약은 전쟁을 종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종료되고 승자와 패자가 결정된 후 평화를 회복하는 절차였다. 지난 200년 간 서구 민주주의는 승리 후 패전국에 대한 자신의 조건을 요구하였다. 나폴레옹전쟁,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승전국은 패전국을 단죄하는 데 익숙해졌다. 평화조약에는 통상적으로 전쟁배상금, 군사력 보유 제한, 정권교체, 전범처벌 등이 포함되었다.⁷⁴

베트남 평화협정에서처럼 승자와 패자가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종식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평화조약은 협상자체가 어려울 수 밖에 없으며, 미국은 베트남 평화협정 이후 유사한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 베트남 평화협정의 미국측 당사자인 키신저(Henry Kissinger) 전 국무장관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미국이 북한과 양자회담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승전국과 패전국의 구별이 없는 평화협정이 될 것이며,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것은 베트남전쟁 이후 처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전쟁에서 체결하는 평화협정이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은 한국전쟁이 남침임을 부인하고, “미국의 침략전쟁 도발에 대해 남조선의 해방을 위해 투쟁한 조국해방전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이 승리한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침략자’인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는 것이 평화회복의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즉, 평화협정의 방법과 형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가 평화협정의 핵심으로 남아있다.

⁷⁴– Towle, *Democracy and Peacemaking*, p. 16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북핵문제와 군비통제에 앞서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상이한 인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 심화된 적대감

한국전쟁은 유례가 없이 인명손실을 초래하였고 민간인 피해가 큰 전쟁이었다. 수십만 명의 군인과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수백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하였으며 가옥과 산업시설이 황폐화하였다. 전쟁은 참가자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기면서 이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지배하였다.

정전협정 체결과정에서부터 적대감이 표출되었다. 평화조약이 아닌 정전협정시 군인들이 협상대표로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것은 아니나 미국은 북한과 중국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인대표를 보냄으로써 보다 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⁷⁵ 외교적으로 의전절차가 무시되었다. 처음 회담은 북한 지역인 개성에서 개최되어 북한은 미군이 패전국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1952년 초까지 2~3개의 주된 이슈는 중립국 감독 위원회에 소련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북한측 주장, 정정협정기간 동안 북한내 파괴된 비행장을 복구해서는 안된다는 유엔군측 주장, 전쟁포로 송환문제 등이었다. 평화조건이 강요된 1919년에도 경멸과 분노는 표출되지 않았으며,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행된 베트남 평화협정 교섭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증오는 이처럼 심하지 않았다.

정전협정 이후 반세기 동안 남북한간, 미국·북한간에는 적대감은 지속·심화되었다. 남한에서는 반공이 국시로 자리잡으며 북한은 ‘멸공통일’의 대상이 되었으며 북한에서는 미국이 ‘민족의 철천지 원수’로서 반미가 모

⁷⁵—Towle, *Democracy and Peacemaking*, p. 161.

든 것에 우선하게 되었다. 북한은 전쟁후 미군의 공습과 ‘양민학살’ 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주한미군을 한반도 강점세력으로 비판하는 등 증오감을 고취시켜왔다. 황해남도 신천에 미군의 ‘만행’을 선전하는 전시관을 세워 북한주민들에게 반미감정을 주입시켰다. 1968년 푸에블로호 낙포사건, 1969년 EC-121기 격추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사건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특히, 북한과 미국간 증오와 경멸은 2001년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최고조에 달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정권은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국가이며, 국제사회의 일탈세력으로 테러지원, 마약거래, 위조지폐 등으로 국제질서의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정일 개인에 대한 인식은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 못지 않게 부정적이며 심지어 경멸적이기까지 하다.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을 ‘피그미’라고 경멸적으로 부르고 “식탁에서 버릇없이 구는 아이”에 비유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⁷⁶ 북한이 ‘악의 축’에 포함된 것도 미사일 수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수출 뿐만 아니라 민생의 희생하에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부도덕성이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는 2005년 1월 18일 미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⁷⁷ 중 하나로 지목하는 등 북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부정적 인식은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2001년 ‘악의 축’에 포함된 것을 시작으로, 2002년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에서 미국의 핵공격 가능 대상

⁷⁶ 피그미(pygmy)는 아프리카 적도 부근의 난쟁이 흑인 혹은 보잘 것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Newsweek*, May 27, 2002.

⁷⁷ 폭정의 전초기지에는 북한과 함께, 쿠바, 베마, 이란, 벨라루스, 짐바브웨 등이 포함되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중국, 러시아)에 포함되었고, 2005년 ‘폭정의 전초기지’에 포함됨으로써 이란과 함께 3관왕을 차지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증진, 어려운 처지의 북한인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목표로 「2004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07년 2·13합의 이후 북·미관계가 비교적 순항하는 가운데도 인권문제 등 북한정권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평가로 북·미간 갈등은 지속되었다. 미국무부는 2007년 4월 5일 발표한 2006년 인권지원활동보고서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라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인권문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도 김정일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였다.⁷⁸

라.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

북한은 한국전쟁이 북한과 미국과의 전쟁이라고 주장하며, 정전협정이 유엔군 사령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그리고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3자에 의해서 서명된 것을 근거로 북한과 미국이 한국전쟁의 당사자라고 주장하여 왔다. 즉, 중국이 북한에서 철수한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간 양자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한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⁷⁹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평화협정을 통해 미군이 철수하

⁷⁸ 부시 대통령은 2007년 9월 7일 호주 시드니에서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의 하나로 열린 ‘재계 정상회의’ 연설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주변 민주국가들의 국민들과 같은 자유를 향유하는 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화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⁷⁹ 성방은 각 5명씩의 협상대표로 구성되었다. 유엔군 대표는 조이(Turner Joy) 수석 대표를 비롯하여 3명의 미군, 그리고 한국군의 백선엽 소장 등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북한군 대표는 남일 수석대표를 비롯한 2명, 중국의 용군 대표는 팽덕회를 비롯한 1명으로 구성되었다.

는 것이 미국에 의해 시작된 전쟁으로부터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여 온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 이후 남부 베트남에서 미군철수에 고무되면서부터이다. 북한의 주장은 1984년 북·미 평화협정과 남북간 불가침선언이라는 이중 구조의 3자회담으로 변형되었으나, 여전히 북·미 평화협정이라는 골간을 유지하였다. 이는 ‘하나의 조선’ 원칙에 입각 북한이 한반도 정통성을 갖고 있으며, 미군이 한반도 남부를 ‘강점’하고 있고 남한 정부는 미국의 ‘괴뢰’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더욱이 남북간에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단독으로 전쟁선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의회가 북·미 평화협정을 비준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⁸⁰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전쟁은 남북한간 갈등이며 남북한이 평화협정의 당사자이다.

정전협정 당사자와 평화협정 당사자는 별개의 것이다. 정전협정은 군사적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조약이며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협정과는 다르다. 실제로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제4조 60항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쌍방 관계당사국 정부에게 정치회담의 개최를 권고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유엔총회결의(1953.8.28)에 의해 16개 참전국·한국과 북한·중국·소련이 정치회담의 당사국으로 정해졌으며, 실제로 정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네바정치회담(1954.4.11~6.15)이 개최되었다.⁸¹

⁸⁰ 박종철,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의 단계적 접근,” p. 127.

⁸¹ 지봉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과정』



베트남전의 예에서도 1956년 제네바회의에서 남베트남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었으나 1973년 평화협정에서는 당사자로 참여하였다. 더욱이 남북한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주요 관련국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협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평화협정의 당사자와 관련,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에서 “직접관련 당사국이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협상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직접관련 당사국’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라는 것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직접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의 당사자 문제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마. 국군포로 송환 문제

6.25 전쟁의 정전협정에서는 포로송환문제가 처음으로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다. 북한은 정전협정 조인과 함께 전원 송환을 주장하였으나, 유엔군의 자유송환(voluntary repatriation)으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이루어진 부상포로 교환을 포함하여 세차례에 걸친 포로교환 절차를 통해 남한에 억류되었던 북한군 포로 76,000여 명과 중공군 포로 7,000여 명이 귀환하였고, 북한에 억류되었던 국군포로 8,343명과 유엔군 포로 5,126명이 귀환하였다.

유엔군 포로가 공산군 포로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은 북한군이 포로 수를 축소한 데 기인하며 지금까지 국군포로 송환문제로 남아있다. 정전협상 초기 유엔군은 20,720명의 중공군 포로를 포함하여 1,302,000 명의 포로를 보고하였으며, 북한은 유엔군 포로를 7만 명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

(북한연구학회 연말 학술회의 자료집, 2005. 12. 2), p. 115.

나 휴전을 반대하던 남한정부는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 27,000명을 석방하였으며, 북한은 유엔군 포로수를 1만 명으로 축소하였다.

한국정부는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는 총 1,770명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 중 생존이 확인된 국군포로는 560명, 사망 910명, 행방불명 3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⁸² 2007년 4월말 현재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총 69명이고 생존 55명, 사망 13명이다. 국군포로 문제는 1994년 조창호 소위의 탈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여 1999년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는 “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본입장 하에 정부는 국군포로가 “국가를 위해 희생된 유공자”라는 점에서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규정하여 접근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8년 6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6·25 전쟁 포로들을 정전협정의 요구대로 전원 송환했다”고 주장하고, 현재 남은 국군포로는 “국군으로 복무하다 전향해온 자”로 규정하고 있다.⁸³

국군포로와 함께 미군포로도 평화협상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미군포로 문제는 1990년대 새로이 부각되어, 북한이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단독으로 6.25전쟁 중 실종된 미군유해 발굴작업을 벌여 유해를 회수했으며 미국으로부터 보상비를 받았다.⁸⁴ 미군의 유해를 발굴, 송환하는 북·미간 협상이 1996년 1월 하와이에서 개최되어 유해발굴

⁸² 국가정보원(탈북자·국군포로의 진술 등을 근거로 작성), 통일부 홈페이지, 납북자 코너, <http://www.unikorea.go.kr/index.jsp> (검색일: 2007. 8. 3); 김수암 외,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8에서 재인용.

⁸³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0&docId=790> (검색일: 2007년 1월 23일 검색).

⁸⁴ 북한은 지난 1954년 2,234구의 미군유해를 송환한 바 있다.



작업을 위한 공동조사반이 구성되어 유해발굴 작업에 착수하였다. 미국 정부는 1996년부터 2005년 5월까지 함남 장진호 부근과 평북 운산 지역에서 모두 225구의 미군 유해를 발굴했으며 유해 발굴비로 북한에 약 2,200만 달러를 주었다.⁸⁵ 가장 최근의 유해송환은 2007년 4월로, 리처드 슨(Bill Richardson) 뉴멕시코 주지사가 북한을 방문하여 6구의 유해를 북한으로부터 인수받은 바 있다.

I

II

III

IV

V

⁸⁵⁻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946461 (검색일: 2007년 12월 5일 검색).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결 론

한반도 평화체제는 불안한 ‘전쟁상태’를 종료하고 ‘적대행위의 재발방지’를 통해 전쟁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구축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군비통제,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상호 교류·협력 체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⁸⁶ 이중 전쟁상태를 종료하는 것은 평화조약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평화조약이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평화조약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평화조약 체결과정은 매우 신중히 접근되어야 한다.

우선, 평화조약은 주권 국가간 조약으로서 적대국 당사자가 평화를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이나 평화조약을 대체하는 현실적 대안이 없기 때문에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⁸⁷ 사실 평화조약은 많은 결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전쟁은 이전의 많은 조약들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조약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협상 참가자들은 늘 시간에 쫓기면서 상대와 협상에 임해야 한다. 평화조약은 승전국이 패전국을 처벌하는 절차이나, 체결된 조약은 국내법과 달리 권위가 없는 상황에서 세계정부 없이 강요가 불가능하다. 또한 걸프 전쟁이나 코소보 사태와 같이 평화조약 없이 국제사회가 유엔결의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패전국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전쟁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다. 베트남 평화협정, 북아일랜드 평화조약, 중동 평화조약은 평화조약이 갈등의 종식을 가져오고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평화협정이 전쟁을 중단시키지도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일·러관계는 평화협

⁸⁶ 김계동,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신뢰구축의 제도화,” 체제통합연구회 편, 『한반도 평화와 통일』(서울: 백산서당, 2005), pp. 155–178.

⁸⁷ George J. Mitchell, “Making Peace,” Fred L. Israel ed., *Major Peace Treaties of Modern History: 1648–2000*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2002), p. xlvi.

정 없이 국교정상화가 가능하며 진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평화조약은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하며, 평화조약 당사자간 신뢰가 형성되기 전에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대부분의 평화조약은 전쟁이 끝난 후에 평화를 회복하는 절차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체결되나,⁸⁸ 한반도 평화체제는 승자와 패자가 없는 평화조약이기 때문에 더욱이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즉,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고 전쟁이 끝나면 일방의 조건이 제시되고 받아들여지는 절차를 거치나, 승자와 패자가 없는 전쟁에서의 평화협상은 훨씬 복잡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비핵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주한미군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연계되어 때문에 북·미 국교정상화 이후 관계개선과 신뢰회복 후 서서히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한반도의 상호 신뢰수준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체제의 결속과 존재 가치를 반미에 두어 왔으며 여전히 반미 교육을 실시하고, 남한의 보수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북한지도부, 특히 김정일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미국과 한국사회에 현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9.11 이후 미국은 민주주의 확산을 주요 외교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북한의 핵 보다는 김정일 정권 자체를 더욱 문제시하고 있다. 20세기 초반 이후 민주사회에서 평화조약 체결시 상대방에 대한 국민 감정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셋째, 평화조약에서는 이념 보다 현실정치가 늘 중요하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본과 독일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 것은 새로이 시작된 냉전에서

⁸⁸ 베트남 평화협정은 전쟁을 끝내기 위하여서 군사적인 목적을 갖고 체결되는 경우였다. 하지만 미국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일방적 철수에 의해 베트남전쟁을 종료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뉴른베르크와 동경의 재판은 재판 당시 비교적 독일국민과 일본국민의 협조하에 진행되었고 대대적인 정치교육이 시행되었으나, 오늘날 많은 독일국민과 일본국민은 이를 승자의 재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한에 대한 처리 방법은 별개의 것일 수 있다. 19세기 들어서 패전국에 대한 응징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지만, 이것이 정권에 대한 응징을 넘어서 국가에 대한 응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보어전쟁이 1902년 끝나고 체결된 베레니킹(Vereeniging) 평화조약은 근대역사에서 가장 관대한 평화조약으로 평가된다. 영국은 남아공에서 농장을 재건하는 것을 돕고, 사면을 제공하고, 헌법을 제공하고, 보어인이 대영제국의 지도인사가 되는 것을 도왔다. 승리가 압도적일수록 승자가 패자에 대하여 책임감을 더 느끼고 더 관대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⁸⁹ 영국은 민족주의에 반해서 보어를 제국에 편입시키는 목표를 달성하자 관대한 정책을 펼쳤다. 또한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일본과 독일에 대한 대대적 지원은 승전국의 패전국에 대한 지원의 예이다. 최근 이라크 전쟁 후 미국의 전후 복구사업도 마찬 가지이다.

끝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간의 무력충돌 방지에만 역점을 두고 분단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통일의 조건을 성숙시키는 통일지향적 평화체제이어야 할 것이다.⁹⁰ 이를 위해 비핵화 뿐만 아니라 재래식 군비,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등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⁸⁹— Towle, *Democracy and Peacemaking*, p. 56.

⁹⁰— 장의관,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p. 51.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원식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김수암 외.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외무부. 『알기쉬운 조약업무』. 서울: 외무부, 1996.
- Anderson, David L. *The Columbia Guide to the Vietnam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 Bellamy, Alex J. *Kosovo and International Society*. New York: Palgrave MacMillian, 2002.
- Cheng Guan, Ang. *Ending The Vietnamese War: The Vietnamese Communists' Perspective*. London: RoutledgeCurzon, 2004.
- Clark, Howard. *Civil Resistance in Kosovo*. London: Pluto Press, 2000.
- Pillar, Paul R. *Negotiating Peace: War Termination as a Bargaining Proces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 Ripsman, Norrin M. *Peacemaking by Democracies: the Effect of State Autonomy on the Post-World War Settlements*.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 Rozman, Gibert. *Japan and Russia: The Tortuous Path to Normalization 1949–1999*.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 Sharansky, Natan. *The Case for Democracy: The Power of Freedom to Overcome Tyranny & Terror*.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Maga, Tim. *Judgement at Tokyo*. Lexington: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01.

Towle, Philip. *Democracy and Peacemaking: Negotiations and Debates 1815–1973*. London: Routledge, 2000.

2. 논문

- 김계동.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신뢰구축의 제도화.” *체제통합연구회 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서울: 백산서당, 2005.
- 박종철.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의 단계적 접근.” *『한반도 평화 체제와 통일과정』*. 북한연구학회 연말 학술회의 자료집, 2005.
- 박현옥. “북한의 휴전협정 위반 반세기.” *『군사논단』*. 통권 제16호, 1998.
- 장의관.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통일정책연구』*. 16권 2호, 2007.
- 지봉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과정』*. 북한연구학회 연말 학술회의 자료집, 2005.
- Axel, Donna K. “Toward a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ooper, Belinda (ed.). *War Crimes: The Legacy of Nuremberg*. New York: TV Books, 1999.
- Dole, Bob. “The Case for a Proper Legacy: From Tokyo to Cambodia.” Maga, Tim. *Judgement at Tokyo*. Lexington: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01.
- Duchhardt, Heinz. “Peace treaties from Westphalia to the Revolutionary Era.” Leasffer, Randall (ed.). *Peace Treaties and International Law in European History: From the Late Middle Ages to World War On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Ferencz, Benjamin. "Nuremberg: A Prosecutor's Perspective." Cooper, Belinda (ed.). *War Crimes: The Legacy of Nuremberg*. New York: TV Books, 1999.
- Friedrich, Jorg. "Nuremberg and the Germans." Cooper, Belinda (ed.). *War Crimes: The Legacy of Nuremberg*. New York: TV Books, 1999.
- Leasffer, Randall. "Peace treaties from Lodi to Westphalia." Leasffer, Randall (ed.). *Peace Treaties and International Law in European History: From the Late Middle Ages to World War On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Meltzer, Bernard D. "Remembering Nuremberg." Cooper, Belinda (ed.). *War Crimes: The Legacy of Nuremberg*. New York: TV Books, 1999.
- Mitchell, George J. "Making Peace." Israel, Fred L. (ed.). *Major Peace Treaties of Modern History: 1648–2000*.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2002.
- Slavinsky, Boris. "The Soviet–Japanese Postwar Peace Settlement in Retrospect." Rozman, Gibert. *Japan and Russia: The Tortuous Path to Normalization 1949–1999*.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 Steiger, Heinhard. "Peace treaties from Paris to Versailles." Leasffer, Randall (ed.). *Peace Treaties and International Law in European History: From the Late Middle Ages to World War On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Teitel, Ruti. "Nuremberg and its Legacy: Fifty Years Later."
- Cooper, Belinda (ed.). *War Crimes: The Legacy of Nuremberg*. New York: TV Books, 1999.
- Tomushcat, Christian. "The 1871 Peace Treaty between France and Germany and 1919 Peace Treaty of Versailles." Leasffer, Randall (ed.). *Peace Treaties and International Law in European History: From the Late Middle Ages to World War On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Toynbee, Arnold. "Anarchy by Treaty, 1648–1967: A Commentary on the Documentary Record." Israel, Fred L. (ed.). *Major Peace Treaties of Modern History: 1648–2000*.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2002.
- Wada, Haruki.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the Definition of the Kurile Islands." Rozman, Gibert. *Japan and Russia: The Tortuous Path to Normalization 1949–1999*.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 Zagorsky, Alexei V. "Reconciliation in the Fifties: The Logic of Soviet Decision Making." Rozman, Gibert. *Japan and Russia: The Tortuous Path to Normalization 1949–1999*.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3. 기타자료

<<http://www.unikorea.go.kr>>.

■■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최의철 조정아	저 저 저	7,000원 8,000원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틸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윤 손기웅	저 저	10,000원 6,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I)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10,000원
2007-15(II)-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3	東北大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4	東北大亞區域合作的新聯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외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9,000원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 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파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9,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합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연례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통일정책분석

비매품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종·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석, 손기웅, 조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준희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미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세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준희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 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호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2007)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비매품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민, 조정아

Studies Series

비매품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회원가입신청서

질
최
선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직위			
간행물 발을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화		FAX	
	전자메일			
	ID		PW	
전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일반회원 () 학생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우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FAX: 901-2547)
-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국제산림경영인증(FSC)마크를 획득한 무염소 펄프 친환경용지 데포레또지(표지)와
이라이트지(본문용지)를 사용하였으며 환경에 유해한 코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www.kinu.or.kr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 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 최 진 익 (崔鎮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대북한행정론』 제2판 (명인문화사, 2008)

『김정일정권과 한반도장래』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하늘길, 바닷길, 땅길 열어 통일로: 통일노력 60년』 책임편집 (다해, 2005)

